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62호 2016. 11. 2.(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107호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고시 협조 2
 거창군 고시 제2016-108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1039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5
 거창군 공고 제2016-104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3
 거창군 공고 제2016-1046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거창군 민원봉사실 (☎055-940-3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거창군수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거창군	0	4	0	46

- 국가기초구역별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따로 붙입니다.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0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22 외 8건(부여 7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22	2009-04-01	2016-11-02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50	2009-04-01	2016-11-02	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 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 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4	2009-04-01	2016-11-02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59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17-43	2009-04-01	2016-11-02	노루고개길이라는 옛지명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3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명산동길 31	2009-04-01	2016-11-02	마을 뒷골짜기에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는 고목생화 명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 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21-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07	2009-07-02	2016-11-02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46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신천길 69-28	2009-04-01	2016-11-02	신천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일련 번호	폐지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4	2009-04-01	2016-11-02	건물철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비점 개선 보완

3. 주요내용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공동위원장에서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

나. 기업유치 특별지원 신설(안 제11조)

○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특별지원 신설
다.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라.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지방세로 범위 확대(안 제17조)

바.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

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관내 기업(3년 이상, 10명 이상)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을 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 한도 지원

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항목 신설(안 제15조)

○ 의료시설 등 서비스지원시설 신축비의 100분의 50이내 지원 등

다.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세부규정 추가(안 제18조)

○ 보조(융자)금 지원기업의 경영실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4. 개정조례안 : 붙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5.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8. ~ 2016. 11. 17.(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 055-940-3377, fax 940-367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담당 **【☎ 940-337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2016.10. .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나.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공동위원장에서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
- 나. 기업유치 특별지원 신설(안 제11조)
 -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특별지원 신설
- 다.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라.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
- 마.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지방세로 범위 확대(안 제17조)
- 바.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

②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가.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관내 기업(3년 이상, 10명 이상)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을 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 한도 지원
- 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항목 신설(안 제15조)
 - 의료시설 등 서비스지원시설 신축비의 100분의 50이내 지원 등
- 다.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세부규정 추가(안 제18조)
 - 보조(융자)금 지원기업의 경영실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위원회의 설치)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

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도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7. “이전보조금”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자절차 및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

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다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설투자 지원대상은 거창군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억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21조에 의거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등)

-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 4. 투자계획 이행사항
-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3년 이내에 해고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8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⑥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

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행한다.

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장 부 지 매 입 비 용 자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E-mail	
		FAX		
입 주 유 형				
공장 소재지				
분 양 면 적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기준공장면적율 (%)	
평 당 가 격	원	총부지가격	백만원	
부지 계약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 투 자 액	백만원	시설투자액	백만원	
공장 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용자 신청액	원	용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매입비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거 창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2호서식】

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				
신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대 표 자		생년월일	
인	법인 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창 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 신설(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분 양 가		원/m ²	분양가 납부방법	년거치 분할상환
분 양 면 적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신규채용상시근로자	명
보조사업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 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사본 1부 5.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 시설투자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조례시행규칙 제2조제9호 관련) 8. 기타증빙자료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주소제외)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창 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	(산업단지명 :)		
공 장 설 립 일		업 종 (분류번호)	()
상 시 고 용 인 원	총 인 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 육 훈 련 기 관		소 요 금 액	백만원
보 조 금 신 청 액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없 음
2.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는 이전 또는 증설 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조금 신청 업체는 제외)1부			
3.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공장 □ 시설 보조금 신청서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 이전 </div>				
신청인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화 F A 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신설(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_____)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_____)	
		주요생산품		
신규채용 상시근로자(명)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 위 : 백 만 원)				
과 목	신규취득공장시설	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공장시설가액 ①-②
합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도비: _____ 시군비: _____)		
보조사업 담보방법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 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대표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신청일 현재 6월이내의 결산 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3.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조례시행규칙 제2조제9호 관련) 4.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타 증빙자료.		1.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7호서식】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합 계		투자계획	비고
	토지 매입비			
	건 축 비			
	시 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사 착수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거 창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 자 방 법	현 금		자본채		산업재산권등
구 분	▫ 신 규	▫ 증 자	사업개시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또는 대리인) (전화)</p> <p>거창군수 귀하</p>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구 비 서 류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수 수 료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사본 1부				없 음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채	산업재산권등	
구분	◦ 신규	◦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채				산업재산권등			
구분		◻ 신 규		◻ 증 자		사업개시예정일							
시설 내역	소재지												
	착공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신·증설 개요		시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또는 대리인) (전화)</p> <p>거창군 수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로 한정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m ²	m ²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투자

- 입 지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 교 육 훈 련 보 조 금
 - 시 설 보 조 금
 - 이 전 보 조 금
- 정 산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상 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사업개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3. 정산내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인)
(또는 신고인) (전화)

거창군수 귀하

- 붙 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등 사본 1부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R&D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본점의 도내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임대용지 공급)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용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의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도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7. “이전보조금”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

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2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별 공장 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본점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이송된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내에 통지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등에 관한 민원의 접수 및 상담
7.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2.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공업입지 업무담당자
3. 도(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4. 해당 시·군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 투자유치센터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 ①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5조에 의거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15조(융자금의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도 또는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때 시·군은 협약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분만 지원하되, 5년 내에 축소 또는 폐업할 경우 조기상환 조치한다.

2. 융자대상 업종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용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 ③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더한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18조(투자유치위원회)

- ①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19조(보조금의 결정)

- ① 도지사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3년 이내에 해고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제2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 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용자요건 및 지원기준)

-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지역에 따른 차등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을 하여야 한다.

[별표1] (제9조의 2 관련)

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구 분	시·군명	지원대상(투자액/고용)	지 원 기 준
A지역	창원, 김해, 양산	150억원,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B지역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100억원, 5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C지역	밀양, 창녕, 고성	70억원, 40명이상	부지매입비 50%
D지역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0억원, 30명 이상	부지매입비 60%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항)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 월 5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31. ~ 2016. 11. 2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055-940-3092, fax940-3089 또는 전자우편 parkjongin@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모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09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몰군경의 유족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5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예시(일부개정조례(규칙)안 해당)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p> <p>① 군수는 전몰군경의 유족과 <u>참전유공자로서</u>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명예수당: 참전유공자</u>, 전몰군경의 유족</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명예수당: 월 10만원</u></p> <p>2. 사망위로금: 30만원</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p> <p>① 군수는 전몰군경의 유족과 <u>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u> -----</p> <p>-----</p> <p>-----</p> <p>-----</p> <p>-----</p> <p>-----</p> <p>1. <u>명예수당: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 전몰군경의 유족</p> <p>2. -----</p> <p>-----</p> <p>② -----</p> <p>-----</p> <p>-----</p> <p>1. <u>명예수당</u></p> <p>가. <u>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월 10만원</u></p> <p>나. <u>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5만원</u></p> <p>2. -----</p>	<p>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추가함</p> <p>직접당사자 10만원 간접당사자 5만원</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2011.04.04 조례 제2021호
(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2117호
(일부개정) 2013.09.25 조례 제2159호
(일부개정) 2014.04.02 조례 제2182호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2.10 조례 제22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1.09)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삭제 2015.12.10.)

제8조(공공시설 이용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개정 2013.01.09)

제9조(삭제 2013.9.25.)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09 2013.9.25.)

1.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전몰군경의 유족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 30만원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 ①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④ 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에 관하여는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제4장 보칙

제14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개정 2013.01.09)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개정 2013.01.09)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4.4,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및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를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82호 개정2014.4.02.)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5.12.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조례명 변경,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및 목적조항 정비함(안 제1조)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거 :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조례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

○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 법령개정사항(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 미반영으로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4조)

- 법령 개정사항(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과징금에 관한 사항) 미반영,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문”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간사, 회의, 심의요청,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 ~ 2016. 11. 22.(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42**, fax 940-3219 또는 거창군청홈페이지(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공고/고시란(<http://www.geochang.g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 940-324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당주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심의요청)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4호, 2016.5.29., 일부개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 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제60조제2항 개정 전]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2016.1.15. 개정 전 위원장 임기규정]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2016.1.15.>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